

## 資 料

### 〈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신구조문 대비표〉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제2조(부회위원) ① 공업표준화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부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~4. 생략 ② 생략 ③ 생략</p>	<p>제2조(심의위원회 위원) ① 공업표준화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1조 제2항의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~4.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심의위원은 정부부처, 단체, 연구소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직위에 있는 자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.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</p>	<p>〈신설〉 ○ 당연직위원 임명 근거</p>
<p>제3조(전문위원)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</p>	<p>제3조(전문위원)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정부부처, 단체, 연구소등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보직을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직위에 있는 자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본다. ③ 현행 제2호와 같음 ④ 현행 제3호와 같음</p>	<p>〈신설〉 ○ 당연직위원 임명 근거</p>
<p>제16조(공장심사기준) ①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한 공장심사는 3월간의 관리기록 실적에 의하여 실시한다. 다만, 법 제15조의 4의 규정에 의거 표시명령된 품목과 전량 관납 위주 품목으로서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월 미만의 관리기록 실적에 의할 수 있다. ②~③ 생략</p>	<p>제16조(공장심사 요령) ①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심사는 6월간의 관리기록 실적에 의하여 실시한다. 다만,.....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미만의 관리기록 실적에 의할 수 있다. ②~③ 현행과 같음</p>	<p>○ 용어의 정리 ○ 공정 및 품질 상 문제점 도출을 위한 기간연장 및 관리기록 등의 조작방지</p>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제 19조(공장심사의 생략)</p> <p>① 생략</p> <p>1. 생략</p> <p>2. 공업진흥청장의 기술지도를 받은 공장이 해당규격 수준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된 후 1년이내에 신청한 경우</p> <p>3.~4. 생략</p> <p>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품시험을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평가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제 19조(공장심사의 생략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1. 현행과 같음 (삭제)</p> <p>2.~3. : 현행 3~4호와 같음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는 평가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
<p>제 20조(표시의 허가·승인)</p> <p>① 별표 1의 “평가결과에 대한 표시 허가 판정기준”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동일 공장에서 수종의 규격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동일 허가증에 일괄기재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 20조(표시의 허가·승인)</p> <p>① 별표 1개정 : 내용별첨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동일공장에서 같은 규격에 대하여 수종의 종류·등급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.....</p>	
	<p>제 20조의 2(판정회의) ① 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표시의 허가 또는 표시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정회의를 두어 심의결정한다. 다만,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허가수준에 미달된 경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·분석결과 불합격된때와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판정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1. 신규품목</p> <p>2. 신규공장</p>	<p>○ 신설</p> <p>○ 허가의 신중을 기하고 심사요원의 형식적 심사를 예상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판정회의 운영</p>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제23조(생산중단 보고) 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중단 보고는 그 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한다.	<p>② 판정회의는 표준국장과 공업진흥청장이 지명하는 관계관, 심의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표준국장이 의장이 된다.</p> <p>③ 판정회의는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2/3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 한다.</p> <p>④ 판정회의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 판정을 한다.</p> <p>⑤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판정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
제23조(생산중단보고) 규칙 제13조 제3항의 ..... 생산중단보고(주문생산품 포함)는.....	○ 주문생산품의 경우도 생산중단 보고 대상에 포함됨을 강조	
제25조(사후관리 종합계획 수립) ① 공업진흥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품목별·공장별로 사후관리기관, 시기, 방법을 정한 다음년도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·국립공업시험원장 및 지방공업시험소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. ② 도지사·국립공업시험원장 및 지방공업시험소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품목별·공장별 사후관리계획을 매년 11월말 까지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
제25조(시판품 조사) ①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는 시중 유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유	제 25조의 2(시판품 조사) ① 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는 소비재·안전·위생관련 품목 및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	○ 전품목에 대하여 공장검사를 실시하고 소비재, 안전, 위생 관련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통과정에서 시료채취가 어려운 공장의 품목에 대하여는 당해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판품조사시 채취하는 시료의 량은 심사기준을 준용한다. 다만, 공업진홍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관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, 그 시료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③ 도지사는 매년 1회이상 시판품조사를 위한 정기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공업진홍청장은 도지사가 시판품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되는 사항을 시달할 수 있다.</p>	<p>품목에 대하여 공업진홍청장 및 도지사가 매년 1회이상 유통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다. 다만, 유통과정에서 시료의 채취가 어려운 공장의 품목에 대하여는 당해공장에서 채취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의한 시판품조사 대상품목은 공업진홍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 <p>③ 시판품조사시 시료채취는 허가구분(종류, 등급)별로 실시하고 시료의 량은 당해품목의 심사기준에 의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품목의 대표종류 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.</p> <p>〈삭제〉</p> <p>〈삭제〉</p>	<p>품목 및 공업진홍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판품조사 병행</p> <p>○ 사후관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허가구분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예산 및 시험업무 폭주등으로 전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종류·등급만 실시하도록 함.</p> <p>○ 실시주기 강화 2년마다 1회→ 매년 1회</p> <p>○ 시판품조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만 공장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시판품조사가 가능한 품목까지 공장검사 확대실시</p> <p>○ 전품목에 대하여 공장검사실시 하므로 별도로 정할 필요없음</p>
<p>제26조(공장검사)①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검사는 정기검사와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/p> <p>② 정기검사는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판품조사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씩 실시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의한 정기검사 대상품목은 공업진홍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26조(공장검사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정기검사는 공업진홍청장, 도지사, 국립공업시험원장 및 지방공업시험소장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매년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〈삭제〉</p>	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④ 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시행령 제3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의한 검사</li> <li>2.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 능력평가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</li> <li>3. 제29조 제5항에 의한 검사</li> <li>4.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</li> </ol> <p>제 26조의 2(표준화능력평가기관에 의한 검사)</p> <p>①~④ 생략</p> <p>⑤ 공업진흥청장은 검사를 받은 업체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.</p> <p>다만, 제30조 제4항의 평가기관에 검사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제품시험 수수료</li> <li>2. 5급 공무원에 준한 여비 및 공업 표준심의회위원에 준하는 수당</li> </ol> <p>⑥~⑧ 생략</p> <p>제 27조(공장검사 요령) 제26조에 의한 공장검사는 심사기준에 의하되 제18조 제1항에 의한 제품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③ 시료채취는 허가구분별(종류, 등급)로 실시하되 시료의 량은 당해품목의 심사기준에 의한다.</p> <p>④ 특별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현행과 같음</li> <li>2. 현행과 같음</li> </ol> <p>〈삭제〉</p> <p>3. 정부기관, 정부투자기관 및 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 제품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통보된 경우</p> <p>4. 현행 제4항과 같음</p> <p>①~④ 현행과 같음</p> <p>〈삭제〉</p> <p>⑤ 현행 제6항과 같음</p> <p>⑥ 현행 제7항과 같음</p> <p>⑦ 현행 제8항과 같음</p> <p>제 27조(공장검사 기준)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.....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제26조 제4항의 경우에는 심사기준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○업체의 경비부담근거는 고시로는 곤란하여 법에 반영예정(감사원 시정요구사항임)</p> <p>○용어정리</p>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제 28조(사후관리 면제)</p> <p>①~② 생략</p> <p>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사후관리 면제는 시판품조사 및 정기공장검사에 한한다.</p>	<p>제 28조(사후관리 면제)</p> <p>①~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제1항에 의한 사후관리면제는 시판품조사 및 정기공장검사에 한하고 제2항에 의한 사후관리면제는 시판품조사에 한한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표준화 및 품질관리상→시판 품조사 및 공장검사 면제</li> <li>○ 협의회 회원업체→시판품조사만 면제</li> </ul>
<p>제 29조(처분) ① 허가공장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의거 처분할 때에는 표시허가 구분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</p> <p>1. <u>개선명령</u> :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상업체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1월이내에 시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검사 결과 심사기준에 정한 심사항목의 관리실적이 미비하나 제품의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으로서 단기간내에 그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</p> <p>나. 규격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품의 종류 또는 등급을 변경함으로써 시정이 가능할 때</p> <p>다. 생략</p> <p>라. 규칙에서 정한 문서의 비치 및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보고한 때</p> <p>마~바. 생략</p> <p>사. 정부기관, 정부투자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 제품 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통보된 경우로써 그 불합격내용이 경미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고 단기간내에 보완이 가능한 때</p>	<p>제 29조(처분) ① 허가 및 승인공장에 대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할 때는 표시허가 구분별로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.</p> <p>1. <u>개선명령</u> : 현행과 같음</p> <p>가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검사 결과 심사기준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미흡한 경우 다만, 심사기준중 자재의 관리, 공정관리, 제품의 품질의 평가결과 평점이 C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나. 제품시험결과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내용이 경미하여 단기간내에 시정이 가능한 때</p> <p>다. 현행과 같음</p> <p>라. 상공부령에서 정한 문서의 비치 및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마~바. 현행과 같음</p> <p>〈삭제〉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허가공장과 승인공장의 처분기준을 동일시하여 통합</li> </ul> <p>○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의 신청으로 보아 특별공장검사실시</p>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<u>2. 표시정지</u> :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월간 표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가. 개선행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</p> <p>나. 규격 위반사항이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에게 손실을 준다고 인정되었을 때</p> <p>다. 표시허가시 지정한 표시방법등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</p> <p>라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검사 결과 표시허가 심사기준에 정한 심사항목의 관리실적이 미비하여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</p> <p>마. 동일규격 품목에 대하여 개선행령을 받았던 허가공장이 처분일자인 후 2년이내에 다시 개선행령 사유가 발생할 때</p> <p>바. 정부기관, 정부투자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 제품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통보된 경우로써 그 불합격 내용이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에게 손실을 준다고 인정될 때</p> <p><u>3. 판매정지</u> :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당해제품을 회수하여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3월간 판매정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가. KS표시 명령품목으로서 규격 위반사항이 품질을 저하시켜 인명의 꾀해나 화재의 발생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에게 손실을 준다고 인정될 때</p> <p>나. 제5호에 의한 KS표시의 제거가</p>	<p>사. 표시허가시 지정한 표시방법등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(삭제)</p> <p>다. 표시허가시 지정한 표시방법등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(삭제)</p> <p>라.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검사 결과 표시허가 심사기준에 정한 심사항목의 관리실적이 미비하여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(삭제)</p> <p>마. 동일규격 품목에 대하여 개선행령을 받았던 허가공장이 처분일자인 후 2년이내에 다시 개선행령 사유가 발생할 때 (삭제)</p> <p>바. 정부기관, 정부투자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 제품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통보된 경우로써 그 불합격 내용이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에게 손실을 준다고 인정될 때 (삭제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표시정지에서 이기</li> <li>○ 표시정지제도를 없애고 동사유 발생시 개선명령 및 허가취소로 이기</li> <li>○ 실효성 확보가 미흡함</li> </ul>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한 때</p> <p><u>4. 허가취소</u></p> <p>가. 표시정지, 판매정지 또는 표시제거처분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</p> <p>나. 동일규격 품목에 대하여 표시정지, 판매정지 또는 표시제거 처분을 받았던 허가공장이 처분일자 이후 2년이내 다시 표시정지, 판매정지 또는 표시제거처분의 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</p> <p>다. 규격위반 제품에 사용된 자재, 시설, 장비 또는 공장등으로 보아 규격위반 사실을 생산자가 제품생산 이전에 미리알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</p> <p>라.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중단 기간이 계속하여 1년이상인 때</p> <p>마. 허가공장이 KS표시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장으로 하여금 생산하게 한 제품을 자체생산 KS표시품으로 위장한 사실이 발견된 때</p> <p>바. 기술수준이 뒤따르지 못하거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상태가 불량하여 KS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</p> <p>사. 폐업, 규격의 폐지 또는 기타의 사유로 표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</p> <p>아. 부당한 방법으로 KS표시허가를 받았을 때</p> <p><u>5. 시판품 표시제거</u></p> <p>표시정지, 판매정지 또는 허가취소의</p>	<p><u>2. 허가취소</u></p> <p>가. 개선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</p> <p>나. 동일규격 품목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받았던 허가공장이 처분일자 이후 2년이내에 3회 개선명령사유가 발생할 때</p> <p>다. 규격위반사항이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에게 손실을 준다고 인정되었을 때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격을 위반하여 KS표시품을 생산하였을 때</p> <p>라. 현행과 같음</p> <p>마. 허가 및 승인공장이 KS표시허가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공장.....</p> <p>바. 기술수준이 뒤따르지 못하거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검사 결과 심사기준중 자재관리, 공정관리, 제품의 품질의 평가결과 평점이 C가 있을 경우</p> <p>사. 현행과 같음</p> <p>아. 부당한 방법으로 KS표시허가 및 승인을 받았을 때</p> <p>자. 법 제 20조 제1항에 의한 공장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때</p> <p>&lt;삭제&gt;</p>	<p>○ 승인취소 가목에서 이기</p> <p>○ 실효성 확보 미</p>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로 하여금 유통 중인 시판품에 대한 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② 승인공장에 대한 처분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표시정지 :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될 때에는 3개월</p> <p>가.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보고한 때</p> <p>나. 규격위반사항이 품질저하를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때</p> <p>2. 승인취소</p> <p>가.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장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때</p> <p>나.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을 하지 않았을 때</p> <p>다. 제1항 제4호 각목에 정한 사유 와 동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내용을 당해공장에 통보하고 당해 공장은 처분기간내에 시정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 제4호, 제2항 제2호 또는 제7항 제3호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된 공장은 6개월이내에 동일제품의 허가를 재신청할 수 없다.</p> <p>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항을 해당공장이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보고가 있을 때에는 허가공장에 표시품 생산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. 이 경우 시정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공장검사를 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제5항의 시정결과 보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공장검사는 심사기준에</p>	<p>〈삭제〉</p> <p>② 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 내용을 당해공장에 통보하고 제1항 제2호 의거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 된 공장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동일 제품에 대한 재허가를 할 수 없다.</p> <p>〈삭제〉</p> <p>〈삭제〉</p> <p>〈삭제〉</p>	<p>흡으로 삭제</p> <p>○ 승인공장은 허가공장 처분기준과 동일시하여 통합</p> <p>○ 표시정지제도 폐지로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없음</p>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의하여 실시한다. 다만,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당해 개선 항목만을 검사한다.</p> <p>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처분중 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처분에 따라 제3항의 시정보고가 있어 그 확인검사를 한 경우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확인검사 결과 처분기간내에 합격으로 판명된 경우 :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해제</li> <li>2. 확인검사결과 처분기간 이후에 합격으로 판명된 경우 : 합격으로 판명된 날에 처분해제</li> <li>3. 확인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명된 경우 : 불합격으로 판명된 날에 허가취소</li> </ol> <p>제 30조(평가기관 지정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~② 생략</li> <li>③ 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을 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.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표준화지도 기능을 가진 법인으로서 기술지도와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을 것</li> <li>2. 화학, 섬유, 전기, 전자, 금속, 토건</li> </ol>	<p>③ 제25조의 2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시판품조사 및 공장검사결과 기준미달공장에서 행정처분이전에 자진반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KS표시허가 공장의 자진반납을 접수한 경우는 다른 사후관리 기관에서 사후관리결과 불합격되어 처분증인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〈삭제〉</p> <p>제 30조(평가기관 지정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~② 현행과 같음</li> <li>③ 현행과 같음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현행과 같음</li> <li>2. 화학, 섬유, 기계, 전기………</li> </ol>	<p>○ 사후관리결과 기준미달업체의 행정처분 이전에 자진반납 배제</p> <p>○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제도 폐지</p> <p>○ 기계분야 추가</p>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및 일용품등 해당분야 별로 제31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한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</p> <p>④지방공업시험소 및 도자기시험소는 제3항에 의거 지정한 표준화 능력평가기관으로 본다.</p> <p>제31조(평가기관에 의한 공장심사)</p> <p>①~② 생략</p> <p>③ 평가기관의 심사관은 별표 4에서 정한.....</p> <p>④ 생략</p> <p>⑤ 평가기관은 기술지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공장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31조 제3항에.....</p> <p>〈삭제〉</p> <p>제31조(평가기관에 의한 공장심사)</p> <p>①~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 별표 4의 공장심사관 자격기준 개정 : 내용별첨</p> <p>④ 현행과 같음</p> <p>⑤ 삭제</p>	<p>및 인용조문 정정</p> <p>○ 평가기관에서 삭제</p> <p>○ 규정의 실익이 없음</p>
<p>제32조(KS표시허가 업체협의회 구성운영)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제1항에 의하여 구성된 품목별 협의회는 매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32조(KS표시허가 업체협의회 구성운영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② 제1항에 의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품목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이 별도로 정한 품목에 한한다.</p> <p>③ 현행 제2항과 같음</p> <p>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협의회 운영규정</li> <li>2. 협의회구성 대상품목</li> <li>3. 협의회 회원업체 및 임원명단</li> <li>4. 사업계획</li> <li>5. 요건을 사후관리담당자 및 사무소</li> <li>6.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</li> </ol>	<p>〈신설〉</p> <p>○ 협의회 구성요건 추가</p>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												
	<p>인정하는 경우</p> <p>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회원업체수가 관장품목의 총허가업체수의 90% 이상으로서 10개업체 이상이여야 한다.</p> <p>⑥ 현행 제3항과 같음</p> <p>⑦ 공업진흥청장은 제5항의 사후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⑧ 공업진흥청장은 사후관리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인정한 협의회에 대하여서는 사후관리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의회 구성요건 추가</li> </ul> <p>〈신설〉</p> <p>〈신설〉</p>												
제33조(교육·훈련의 실시) ① 시행령 제33조의 4에 의거 실시할 수 있는 교육·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대표자 한 사람이 수개의 허가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제1호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급 경영간부가 대표자를 갈음할 수 있다.	제33조(교육·훈련의 실시) ① 시행령 제3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공장의 대표자와 품질관리담당자는 한국공업표준협회에서 실시하는 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·훈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표자 한 사람이 수개의 KS허가 공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실질적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사급 경영간부를 대표자로 갈음할 수 있다.	<p>〈도표삭제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안정리</li> </ul>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교육·훈련 대상</th> <th>교육·훈련요건</th> <th>과정</th> <th>교육·훈련 기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대표자</td> <td>           가. 표시허가를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(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제외)            나. 표시정지 또는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        </td> <td>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과정</td> <td>한국공업 표준협회</td> </tr> <tr> <td>2. 품질관리담당자</td> <td>품질관리 담당자는 지정된 후 3년마다(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의한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</td> <td>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과정</td> <td>한국공업 표준협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교육·훈련 대상	교육·훈련요건	과정	교육·훈련 기간	1. 대표자	가. 표시허가를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(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제외) 나. 표시정지 또는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	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과정	한국공업 표준협회	2. 품질관리담당자	품질관리 담당자는 지정된 후 3년마다(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의한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	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과정	한국공업 표준협회	<p>1. 표시허가를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다만, 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2.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허가 취소된 공장이 재신청하는 경우</p> <p>3. 품질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후 매 3년이 경과될 때마다 다만, 품질관리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 교육으로 갈음한다.</p> <p>② 허가공장은 제1항 제3호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허가 및 승인 공장이 강제취소되어 재신청시 대표자 교육을 받도록 함</li> </ul> <p>○ 인용조문 정리</p>
교육·훈련 대상	교육·훈련요건	과정	교육·훈련 기간											
1. 대표자	가. 표시허가를 받은 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(해당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제외) 나. 표시정지 또는 판매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	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과정	한국공업 표준협회											
2. 품질관리담당자	품질관리 담당자는 지정된 후 3년마다(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의한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을 가진자는 제외)	공업표준화 및 품질관리과정	한국공업 표준협회											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질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.</p> <p>제 34조(품질관리 담당자)</p> <p>① 생략</p> <p>1~4. 생략</p> <p>5. 공업진흥청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p>	<p>제 34조(품질관리 담당자)</p> <p>① 현행과 같음</p> <p>1~4. 현행과 같음</p> <p>5. 평가기관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부서 또는 공업진흥청(국립공업시험원 포함)에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공업진흥청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</p>	<p>○ 품질관리 전문 검사기관이나 공 업진흥청 재직경 력자 자격인정</p>
<p><u>별표 1.</u></p> <p><u>평가결과에 대한 표시허가 판정기준</u></p> <p>○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에 대한 평가구분상의 “가, 나, 다”등 34개항에 대하여 a, b, c로 평가한다.</p> <p>○ 각항에 대한 평가결과 “c”가 없고 심사사항별로 다음의 경우에 허가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표준화 일반 17항목중 a가 9개 이상</li> <li>- 자재관리 4항목중 a가 2개 이상</li> <li>- 공정관리 3항목중 a가 2개 이상</li> <li>- 제품의 품질 5항목중 a가 3개 이상</li> <li>- 제조 및 검사설비사항 5항목중 a가 3개 이상</li> </ul> <p>○ 다만, 심사업체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의 판정기준은 a로 평가한 항목수가 심사사항별 평가항목수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 허가한다.</p>	<p><u>별표 1.</u></p> <p><u>평가결과에 대한 표시허가 판정기준</u></p> <p>○ 심사사항 및 구비요건에 대한 평가구분상의 “가, 나, 다”등 34개항에 대하여 a, b, c로 평가한다.</p> <p>○ 각항에 대한 평가결과 “c”가 없고 심사사항별로 다음의 경우에 허가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표준화 일반 17항목중 a가 12개 이상</li> <li>- 자재관리 4항목중 a가 3개 이상</li> <li>- 공정관리 3항목중 a가 3개 이상</li> <li>- 제품의 품질 5항목중 a가 4개 이상</li> <li>- 제조 및 검사설비사항 5항목중 a가 4개 이상</li> </ul> <p>○ 다만, 심사업체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평가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의 판정기준은 심사사항별 평가항목에 있어 a가 b의 3배이상 일 때 허가한다.</p>	

현 행	개 정(안)	사 유
<p>별표 4. <u>공장 심사관 기준</u></p> <p>1. 생략</p> <p>2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 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표준화 및 품질관리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</p> <p>3~4. 생략</p>	<p>별표 4. <u>공장 심사관 기준</u></p> <p>1. 현행과 같음</p> <p>2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 기사 2급 또는 심사품목의 해당분야 기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.....</p> <p>3~4. 현행과 같음</p>	